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95

발의연월일: 2020. 7. 29.

발 의 자: 김용판·송언석·김형동

김영식 · 최춘식 · 박대수

유경준 • 권명호 • 강대식

김석기 · 신원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내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이하'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중처벌됨.

한편 현행법은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참작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에 대하여는형의 감경·면제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는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소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되었더라도 엄중한 가중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과 관련하여서

도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처벌의 구체적 타당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8조의2).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 중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을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	제158조의2(형의 감면)
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	
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	
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u>利15</u>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의13
	,